

# 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1.07.15. 규정 제2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공모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모사업 선정기관 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공모사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3.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등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위원 3인과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 ③ 내부위원은 배분심의위원회 위원 2인과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당연직) 1인으로 한다.
- ④ 외부위원은 각 사업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⑤ 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위원(이하 "회의구성위원"이라 한다)은 대표이사가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에 필요한 위원을 제4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결정된 회의구성위원이 회의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회의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당연직)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나눔사업 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비밀 엄수 등에 대한 서약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1.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공모사업에 심의 및 평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긴급지원 공모사업이 필요한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에 관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서 약 서

본인은 남양주시복지재단 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에 임할 것이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비밀 및 제반 보안 사항을 임기 중 또는 임기가 끝난 후에도 누설  
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